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18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김정호·박선원·어기구

허종식 • 최기상 • 박 정

유후덕 · 임미애 · 이연희

이후기 • 이수진 • 정성호

신영대 • 전재수 • 김남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 안을 신속히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고령금융소비자"란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 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 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를 말한다.
- 12. "금융피해"란 피해자의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기망(欺罔), 공갈(恐喝), 강요, 위력(威力), 개인정보의 부정 취득·사용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제5장에 제1절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금융판매업자등의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 제32조의2(거래지연조치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15일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고령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이하 "거래지연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 위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 3.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령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유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거래지연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감독원에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 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거래지연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통지·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32조의3(제3자에 대한 통보) ① 고령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자신의 금융거래의 목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단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 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해당 금융거래 요청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통보대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명단에 기재된 자
 - 2. 계좌의 공동소유자
 - 3.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 제32조의4(민사상 면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2조의5(고령금융소비자 보호시책 마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고령금융소비자 대상의 금융피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고령금융소비자의 금

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금융소비자 대상의 금융피해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11. "고령금융소비자"란 65세 |
| |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 중 |
| |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
| | 으로 금융거래(「금융실명거 |
| |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 |
| | 용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 |
| | 는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 |
| |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 |
| | <u>다.</u> |
| <u> <신 설></u> | <u>12. "금융피해"란 피해자의 금</u> |
| | <u>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u> |
| |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
| |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 |
| | 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
| | 기망(欺罔), 공갈(恐喝), 강요, |
| | 위력(威力), 개인정보의 부정 |
| | 취득ㆍ사용 또는 그 밖의 부 |

<신 설>

<신 설>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 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입 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제1절의2 금융판매업자등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제32조의2(거래지연조치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 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고령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이하 "거래지연조치"라 한다)를할수 있다.

-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

 사수신행위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 3.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 령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유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거래 지연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감 독원에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 거래의 목적을 확인한 결과 해 당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 래지연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연 조치에 관한 통지·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신 설>

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제3자에 대한 통보) ①
고령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
매업자등이 자신의 금융거래의
목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
록 신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단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 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 가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해당 금융거래 요청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통보대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명단에 기재된 <u>자</u>
- 2. 계좌의 공동소유자
- 3.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제32조의4(민사상 면책)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제32조의2제1항

<신 설>

<신 설>

또는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의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의5(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등) ① 금융위원회 는 매년 고령금융소비자 대상 의 금융피해 실태와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금융소비 자 대상의 금융피해 실태조사 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